

미국 판결

원고가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임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제한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인 현실적 악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Lapointe 대 Van Note 사건  
 Columbia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원고 : Eugene Lapointe  
 피고 : Craig van note 등  
 No. 03-2128(RBW)  
 2006. 12. 15

미디어 내용의 규율<sup>1)</sup>

[1] 명예훼손 - 공직자(공무원, public official)/공인(공적인물, public figure) - 제한적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s)(§ 11.2005)

야생생물 보호 협약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UN 사무소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원고는 환경 잡지 기사로 유발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제한적 공인에 해

당한다. 위 기사는 원고가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 사무총장의 자리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제한적 공인이라는 근거로,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주어질 보호수준 문제가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한 실질적 파생 효과를 가져다주는 공적 논쟁(public controversy)인 점, 원고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 및 지도

1) (번역자 주) 편집자가 판결 내용을 요약한 판시 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판결 원문에 실려 있지 않다. 이하에서 판결 원문에 실려 있는 각주는 '각주'로, 번역자의 각주는 '번역자 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24권 1호(통권90호 2004. 3. 봄)와 한위수,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24권 1호(통권90호 2004. 3. 봄)가 있다.

자로 활동하였고, 단체 구성원들에 의하여 승인된 정책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의사를 결정한 지위에 있고, 공개적으로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 원고의 논쟁 참가가 토론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관여에 이르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내용이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및 원고의 사무총장 해임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 명예훼손 - 책임의 기준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 11.3002)

원고는 직능 단체 및 언론인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보호수준에 대한 논쟁 관련 기사(특히 원고가 상아 무역의 완전한 금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임되었다는 부분)를 공포함에 있어서 그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언론인이 기사의 문제된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 그의 개인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공표된 보도자료에 의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들이 원고의 해임 결정을 반복한 UN항소위원회(U.N. appeals board)의 결정 또는 그러한 조치를 언급한 원고의 보도자료를 사전에 접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는데 실패한 점, 설사 피고들이 위 위원회의 결정 요약문을 포함한 원고의 보도 자료를 입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 위원회 결정 전문이 공표되었고 피고들 및 다른 비정부기구들과 같은 제3자가 검토를 위하여 위 위원회 결정 전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공표자들은 당사자가 아무리 격렬하게 부인하더라도 부인의 진술(denials)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들이 기사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몇몇 편견 있는 취재원에 의존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 만으로는 진실에 대한 무모한 경시(reckless disregard of truth)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환경 잡지의 발행인, 직능 단체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연방지방법원은 발행인이 제기한 인적 관할권의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하였고, 아울러 직능 단체와 언론인이 제기한 제한 법령(statute of limitations)을 이유로 한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하였다.

피고 Van Note 및 Monitor Consortium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관하여, 인용.

이전 결정(decision) : 33 Med.L.Rptr. 1497.

## WALTON, J. 판사

원고 Eugene Lapointe는 피고 Craig Van Note와 Monitor Consortium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예훼손과 지속적인 비방공격을 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각주 1)<sup>2)</sup>. 현재 이 법원에는 (1) 피고의 사실심

2) (각주1) 2004. 11. 9. 이 법원은 Earth Island Institute가 인적 관할권의 흠결을 이유로 사건의 각하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하여 비영리기관을 피고로 한 부분을 각하하였다. 2004. 11. 9. 명령 : 2004. 11. 9.자 간략한 판결(Memorandum Opinion). 그 판결에서 이 법원은 제한 법령(the statute of limitations)은 1989년의 공개서한(open letter) 청구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되었고, 계속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시간적 제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0. 17. 이전에 발생한 명예훼손에 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 Monitor의 부책임자인 피고 Van Note가 2003년 봄에 써서 Earth Island Journal에 공표한 기사에 관한 것이다.

\* (번역자 주) 공개서한이란 신문 또는 잡지에서 공표된 편지를 말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보통 어떤 것에 항의하거나 의견을 줌으로써 일반적 독자를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리생략판결 신청<sup>3)</sup> (2) 피고의 위 신청에 대한 원고의 반대답변 (3) 원고의 반대답변에 대한 피고의 재답변이 계류되어 있다(각주 2)<sup>4)</sup>.

## I. 사실관계

### A. CITES와 COP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약 170개국의 다양한 정부들 사이의 국제 협정으로서, 야생 동·식물 표본들의 국제거래로 말미암아 야생 동·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협약의 가입국은 위 협약의 결정에 구속을 받으며, 당사국들(parties)로 알려져 있다.

위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들 총회(COP)인데, COP는 모든 당사국들 또는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COP는 대략 매년 2~3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특정 동·식물종이 국제 무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COP는 수차의 개별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이 개별 모임들에 대하여 COP 다음에 숫자를 부여하는데, 가령 6차 COP는 COP 6, 7차 COP는 COP 7이다. COP는 종들(species)을 다음의 3개 부록으로 분류하여 해당 종들의 처우를 표시하고 있다.

1. 부록 I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종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들의 표본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허용된다.

2. 부록 II는 반드시 멸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종들의 생존과 상반되는 이용을 막기 위하여 거래가 통제되어야 하는 종들을 포함한다. 부록 II에 속하는 종들의 국제 거래는 수출허가증 또는 재수출증명서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허가증 또는 증명서는 일정한 조건들 특히 그러한 종들의 거래가 야생종들의 생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관계기관이 발급한다.

3. 부록 III은 적어도 한 나라에서 보호되는 종들을 포함한다. 그 종들을 보호하는 나라는 다른 당사국들에게 거래의 통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CITES는 국제 거래를 통한 남획으로부터 약 5,000의 동물종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동물들은 앞서 언급한 부록들에 실려 있다.

### B. CITES 사무총장

CITES 사무국이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통제를 받으면서 수행하는 임무는 CITES의 운영을 조정하고 권고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 CITES 규정들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CITES의 의사소통

3) (번역자 주) summary judgment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완전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판, 약식판결, 약식재판, 즉결판결, 중간 판결로 불리는데,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보통 Fed. R. Civ. P.라 인용되나, 여기서는 편의상 FRCP라 칭한다)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trial)은 사실이 다투어질 때에 필요한데, 사실의 다툼이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당사자는 재판을 통한 사실심리절차를 생략하고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FRCP §56). 이 신청은 피고의 답변이 제기된 이후 어느 때나 제기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통상 실질적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행하여진 후에 제기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심문 없이 이 신청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부 인용 시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며, 일부 인용 시 분쟁 중인 쟁점만 본격적인 재판절차로 나아가고, 기간 시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절차로 나아간다. 2000년도에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summary judgment로 처리된 사건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7.7%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4) (각주 2) 원고는 또한 피고의 위 신청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실에 관한 피고의 진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 및 진정한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을 돕고 이행을 감시하는 것, 당사국들에게 부록의 수정 제안 등 적절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감독하고 사무국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으로서 원고 Lapointe는 CITES와 그 COP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고 Lapointe는 COP를 대표하여 사무국을 지휘통솔하고 최고책임자로서 기능하므로 CITES에서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CITES 회원국들이 합의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었다. 그는 사무총장의 지위가 환경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위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원고 Lapointe는 CITES 회의에서 제안된 견해뿐만 아니라 토론되는 쟁점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자료와 권장안을 전달하였다. 사무국은 두 개의 다른 시각을 가진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중재할 의무를 가졌다. 사무국에 권고를 함에 있어 원고 Lapointe는 CITES 회원국들과 비정부기구들(NGO) 뿐만 아니라 언론(대중매체, 미디어)에게도 그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 C. 사무총장 자격에서 행한 원고 Lapointe의 업무 수행 :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원고 Lapointe는 1982년부터 채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1990년까지 CITES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다. 사무총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는 환경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리였다. 원고 Lapointe는 본질적으로 사무국의 수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9년 10월 COP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협약 부록 II에서 부록 I로 옮겨져야 하는지 여부, 다시 말

하면 상아 무역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사무총장의 자격 및 사무국의 대표자 자격으로 원고 Lapointe는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전 세계적으로 부록 I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모든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부록 I로 포함시키길 원했던 사람들은 1989년 5월 또는 6월 경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원고 Lapointe가 보여준 행동들과 입장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패의 형태로 CITES 사무국 내부와 연계된 불법적 활동에 대한 혐담이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판들은 제7차 COP 모임에 앞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어떤 보존기구들은 UNEP의 사무국장에게 전달된 1989. 10. 16.자 서한을 회람시켰다. 이 서한은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한 원고 Lapointe의 태도를 비판하고 그를 사무총장에서 해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D. 원고 Lapointe의 해임

원고 Lapointe는 1990년 11월 해임되었다. UNEP의 사무국장이 원고 Lapointe와의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원고는 국제연합공동항소위원회(the United Nations Joint Appeals Board, 약칭 JAB)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sup>5)</sup> JAB는 원고 Lapointe의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UNEP 사무국장의 결정을 뒤집었다. 비록 JAB의 결정이 국제연합(UN)의 공식적 기록의 일부이지만, 당사국들은 UNEP가 그 결정을 공표할 것으로 믿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 Lapointe는 UNEP

5) (번역자 주) UN의 전·현직 직원이 그의 임용조건과 위배되는 행정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사무총장에게 그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할 수 있고, 만일 사무총장이 일정한 시간 안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그 답변이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 직원은 JAB에 청원(appeal)을 제기할 수 있다(<http://www.un.org/jab/how.html>).

의 결정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발행하였다. 원고 Lapointe는 CITES 당사국들, 그의 개인 친구들, 그가 접촉하였던 언론인들(미국과 영국 언론 구성원들 포함), 공개서한(Open letter)에 서명했던 비정부기구들 및 많은 대사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는 보도자료에 JAB 결정 전문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가 배부한 몇몇 보도자료 사본에서만 JAB의 권고안을 언급한 몇 구절을 부가하였다.

#### E. IWMC(국제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의 원고 Lapointe의 지위

원고 Lapointe는 현재 IWMC 세계 보존 신탁기금(World Conservation Trust Foundation)의 의장 겸 최고 책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 Lapointe는 자주 환경문제에 대한 기사를 기고하거나 강연을 한다. 원고 Lapointe는 끊임없이 그 자신을 CITES의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내세우고 있다.

#### F. 피고 Craig Van Note와 분쟁 기사

피고 Craig Van Note는 자연보호론자로서 30년 이상을 일하였다. 피고 Van Note는 1970년대 초에 자연보호연합 및 동물복지기구들로서 피고 Monitor의 최초 사무소를 창설하였다. 그 기구들로는 무엇보다도 미국 동물애호협회 및 야생생물 보호자들(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nd Defenders of Wildlife)을 들 수 있다. 피고 Van Note는 Monitor의 부책임자이다. 그는 환경 운동 모임들과 야생생물 및 서식지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단체들 모임에 참석한다. 피고 Van Note는 원고 Lapointe의 해임을 불러온 1989년 모임을 포함하여 몇 번의 COP 모임에 참석하여 왔

다. 피고 Van Note는 몇 번 CITES 모임에 참석하였지만 그 모임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유하지 않고 버렸다.

피고 Van Note는 1989년의 제7차 COP 모임 동안 다루어진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상아 전쟁 때문에 협약의 온전성과 효율성이 위협받는 위기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 Van Note는 뉴스 보도와 사무총장의 자리를 광고하는 결원 공고와 같은 공표된 정보를 통하여 원고 Lapointe의 해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Van Note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원고 Lapointe의 결백에 관하여 특히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서류가 원고 Lapointe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였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피고 Van Note는 다른 기관들이 UNEP의 결정 서류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UNEP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그 정보가 UN의 공식적 기록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UNEP가 공개적으로 JAB의 결정을 발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 G. 논쟁 중인 기사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기사는 CITES 사무국의 개요와 야생생물의 보존 경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CITES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기사는 또한 다른 자연보존 관련 쟁점들 가운데서도 포경, 상아의 판매, 마호가니 나무와 같은 다양한 쟁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게다가, 그 기사는 CITES가 전달하는 환경적 쟁점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많은 나라들과 개인들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그 기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개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CITES 활동에 대한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넓은 시각과 관련하여 그 기사는 원고와 그의 해임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짧은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그 기사의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80 년대에 사무국은 매년 아프리카 풍광을 뒤덮는 100,000마리의 사체를 남기는 밀렵 침입과 절망적으로 약해지는 CITES의 상아 감시 시스템의 완벽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아 무역을 금지하는 것에 결렬하게 반대하였다. 1989년 스위스에서 열린 CITES 모임에서, CITES의 사무총장이었던 원고 Eugene Lapointe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부록 I에 올리자는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였다(아시아 코끼리들은 이미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그 제안을 뒤집기 위하여 모임 동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 Lapointe는 자연보호 국가 들을 이끌어가는 데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UNEP의 조사는 원고 Lapointe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임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불행하게도 원고 Lapointe의 해임 후에도 사무국에는 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의 후임자는 무능한 UNEP의 관리자로 원고 Lapointe의 추종자들인 CITES 직원들이 반보호적 방법을 고수하도록 허용 하였다. 4면 짜리 기사 중 이 부분이 현재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II. 심사기준

pleadings,<sup>6)</sup> 진술녹취서(depositions)<sup>7)</sup>, 질문서(interrogatories)에 대한 답변, 자백요구(admission)가

선서진술서(affidavit)와 함께 '사실인정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고, 신청 당사자가 법률문제로서의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법원은 FRCP 제56조 (c)항 소정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할 것이다.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Bayer v. Dep't of Treasury, 956 F.2d 330, 333-334 (D.C.Cir.1992) 또한 Anderson v. Liberty Lobby, Inc., 477 U.S. 242, 255 (1986)(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모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형이상학적 의심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Bias v. Ad-vantage Intern., Inc., 905 F.2d 1558, 1561(D.C.Cir. 1990)(인용 Matsushita Elec. Indus. Co v. Zenith Radio, 475 U.S. 574, 586 (1986)). 오히려, 상대방 당사자는 합리적인 사실인정자<sup>8)</sup>가 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Laningham v. U.S. Navy, 813 F.2d 1236, 1242 (D.C.Cir.1987). FRCP 제56조 (c)항 하에서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 본질적 요소의 존재를 확정시키지 못하였고, 그 당사자가 본 재판에서 입증의 책임을 부담한다면, 사실심리생략판결이 주어진다. Hazward v. Runyon, 14 F.Supp.2d 120, 122 (D.D.C.1998) (인용 Celotex Corp. v. Catrett, 477 U.S. 317, 322 (1986)).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고려함에 있어 법원은 ... 확실한 판단 또는 증거의 우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

6) (번역자 주) pleadings란 소답절차(訴答節次), 소답서면이라고 번역되는데, pleading은 사실적 법적 측면에 대한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 진술서를 말한다. 소장(complaint), 피고의 답변서(answer) 및 원고의 재답변인 반대답변서(repl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번역자 주) depositions이란 진술녹취, 증언조서, 증언녹취서, 진술조서, 증언녹취록, 선서녹취서, 구두 혹은 서면으로 행해지는 증인신문,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증거조서라고도 불리는데, FRCP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8) (번역자 주)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서 배심원, 배심원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에서 담당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Reeves v. Sanderson Plumbing Prods., Inc.*, 530 U.S. 133, 150 (2000) 참조.

### III. 법률적 분석

피고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심리생략판결을 구한다. 구체적 근거는 (1) 원고는 법률문제로서의 공인이라는 것, (2) 피고가 문제가 된 기사를 쓸 때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스스로를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원고는 피고들이 야기한 모호한 논쟁이 원고를 제한적 공인의 지위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비록 법원이 원고를 제한적 공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논쟁 중인 기사가 악의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는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기사내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일 때 피고에게 적용된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원고가 공인인지 여부의 쟁점은 법원이 결정할 법의 문제이다. *Waldbaum v. Fairchild Pubs., Inc.*, 627 F.2d 1287, 1294 n. 12 (D.C.Cir.1980) 참조. 법원은 두 가지 유형의 공인이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 (1) 일반적 공인(*general public figures*) - 모든 범위(*all purposes*)에서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 (2)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 특정한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참여시키거나 참여가 되고, 그리하여 제한적 범위의 쟁점들에 한하여 공인이 되는 사람 (인용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51 (1974)). 여기서 이 법원은 원고가 일반적 공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Waldbaum*, 627 F.2d 1292 (매우 엄격한 검증 하에서 '설득력 있는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 그리고 '설득력 있는 명예 또는 악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때만 공인이고... 그러한 지위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된다면 모든 상황에서 공인이 된다) 참조(각주 3).<sup>9)</sup> 나아가 당사자들은 현재 소송에서 원고가 제한적 공인인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어떤 개인이 제한적 공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 가지 검사 기준을 고안해왔다. *Lohrenz v. Donnelly*, 350 F.3d 1272, 1279 (D.C.Cir.2003) (인용 *Waldbaum*, 627 F.2d at 1294). 첫째로, 법원은 공적 논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Waldbaum*, 627 F.2d at 1296 참조. 이러한 접근은 법원으로 하여금 공적 논쟁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한다. 말하자면 직접적 참가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논쟁의 파생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적 관심을 받는 논쟁이었던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그 논쟁에 있어서 원고의 역할을 분석하여야 한다. 사소하거나 결가지 참가는 충분하지 않다.... [제한적 공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토론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special prominence*)을 하여야 한다. 위 연방항소법원은 특별히 현저한 활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가 의도적으로 논쟁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것이

9) (각주 3) 일반적 공인은 보기 드문 존재로 커뮤니티에서 일반적 명성 또는 악명을 가지면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다. *Waldbaum*, 627 F.2d 1292 (인용 *Gertz*, 418 U.S. at 352) 참조. "유명인사이고 그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때에만 일반적 공인이 될 수 있다" *Waldbaum*, 627 F.2d 1292. 대중은 일반적 공인의 생각, 행동 또는 판단을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일반적 공인이 그러한 고려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므로, 통상 일반적 공인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틀림없거나 또는 논쟁에서의 그의 지위 때문에 논쟁의 해결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주장된 명예훼손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Waldbaum의 세 가지 검사기준에 의할 때 피고들은 원고가 제한적 공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1] Waldbaum의 첫 번째 검사기준에 의할 때, 논쟁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접근함에 있어…… 판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여기서, 원고 Lapointe의 CITES에서의 재직기간 동안, 특히 제7차 COP 모임에서 논의된 쟁점은 어떤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부록 I(사냥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 제공) 및/또는 부록 II(제한된 보호 제공)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논쟁이 공적인 측면을 취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언론이 대중으로 하여금 어떠한 판단을 형성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보도내용으로 토론을 다루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실 및 이론들을 밝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피고들은 언론(미디어)의 보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관한 논쟁이 CITES 관련 당사국들을 넘어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또한 그가 언론과 대표자들에게 그의 권고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일반적 대중 또는 어떤 부류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인 실질적 논쟁(a real dispute)”이 공적 논쟁이라고 판시해왔다. 유사한 취지로 Thompson v. Nat'l. Catholic Reporter Publishing Co., 4 F.Supp.2d 833, 838 (E.D.Wis.1998) 사건에서, 법원은 2,000개의 밀위키 지역 일자리를

미국 남부의 비노조 지역으로 옮기는 회사의 결정은 Waldbaum의 첫 번째 검사기준에 의할 때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일자리의 제거 문제가 커뮤니티 및 종교지도자들이 그 결정의 반복을 구하는 호소를 한 점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공적 논쟁과 논쟁을 끌어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Clyburn v. News World Communications, Inc., 903 F.2d 29, 32 (D.C.Cir.1990)(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시청공무원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여성의 약물 제공자였는지 여부, 시청공무원들이 약물 과다복용이 발생한 파티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Trotter v. Jack Anderson Enters., Inc., 818 F.2d 431, 434-35 (5th Cir.1987)(제5연방항소법원은 과테말라 코카콜라 음료회사에서 발생한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폭력은 과테말라가 다른 서반구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미국에서 언론(미디어), 정치지도자들, 인권기관들, 노동조합들 및 코카콜라 주주들 등 사이에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Smith v. A Pocono Country Place Prop. Owners Ass'n, 686 F.Supp. 1053, 1057-58 (M.D.Pa.1987)(연방지방법원은 단체 이사회 회원들에 대한 논쟁이 전국적 또는 심지어 주(州)차원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 거주자들, 특히 단체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Schiavone Constr. Co. v. Time, Inc., 619 F.Supp. 684, 703 (D.N.J.1985)(미국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장관 업무 수행에 적합할지, FBI가 그러한 잠재적 연방공무원들의 업무적합성을 어떻게 조사하는지의 문제는 “진정한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다) 참조. 위에서 언급한 대로,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그

문제가 공적으로 토론되고 비참가인에게 실제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파생 문제를 가지는 것이라면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아프리카 코끼리에 관한 논쟁이 부록 I에 전체적으로 등재됨으로써 멸종으로부터 완벽한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은 확실히 그 토론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견되고 또한 실질적 내용을 가지는 파생문제였다.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를 격상시킬지 여부는 상아 무역에 대한 필연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COP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채택된 종들의 명단과 관계된 결정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원은 아프리카 코끼리 문제는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견되고 실질적인 파생문제를 가지는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한다(각주 4).<sup>10)</sup> 그러므로, Waldbaum의 첫 번째 검사기준 요건은 충족되었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제한적 공인이라는 Waldbaum의 두 번째 검사기준 요건을 충족시켰다. 원고는 UNEP의 통제를 받으면서 1982년부터 1990년까지 CITES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사무총장으로서 COP와 CITES에 책임을 진다. 원고는 CITES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COP를 대표하여 사무국의 지도자 겸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회원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었다. 원고는 CITES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들뿐만 아니라 토론되는 쟁점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자료와 권장안

을 전달하였다. 그러한 쟁점들 가운데 아프리카 코끼리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전면적으로 부록 I에 등재함으로써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행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사무국은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을 포함하여 쟁점들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수 없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지지자들 사이에 조정 중재하고 [어느 한편을 선택할] 의무”를 가진다(각주 5).<sup>11)</sup> 권고를 함에 있어 원고는 CITES 회원국들과 비정부기구들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였다. 비록 원고는 그가 자신을 공적 논쟁에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CITES 사무총장으로서 결정을 내렸고 공개적으로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진술하였다.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논쟁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것이 틀림없거나 또는 논쟁에서의 그의 지위 때문에 논쟁의 해결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원고가 CITES의 사무총장으로 가졌던 책임(아프리카 코끼리를 부록 I에 두어 그 종들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전세계적 파생문제를 가지는 쟁점들에 대하여, CITES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들뿐만 아니라 토론되는 쟁점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자료와 권장안을 전달하는 것)의 결과로서, 법원은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에 대한 원고의 참가가 “사소하거나 약간 스치는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10) (각주 4) 원고의 해임은 또한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주어져야 할 보호수준과 관련된 원고의 공적 참여 및 권고안과 얽혀 있다. 원고는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에 대하여 공적으로 반대하였고, COP 모임에 앞서 그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되었기 때문에, UNEP의 사무국장인 Tolba박사는 원고의 행동들이 허용될 수 없고 당사국들에 대한 보호자인 사무총장의 중립성이 위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무총장 채용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11) (각주 5)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국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인 원고는 사무국의 수장과 같다.

하겠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오히려, 원고가 토론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을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관여가 있었다. Contemporary Mission Inc. v. New York Times Co., 842 F.2d 612, 618 (2d Cir.1998)(제2연방항소법원은 원고들이 “공개적으로 스스로 언론을 이용하였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공개적으로 진술하고 ‘공개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제한된 공인이었다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 Little v. Breland, 93 F.3d 755, 758 (11th Cir.1996)(제11연방항소법원은 공적인 조사와 관련된 기구의 법인 대표로서 지도자 지위를 맡기로 한 원고의 결정은 공적인 논쟁과 유사한 상황에 스스로를 맡기는 원고의 자발적 결정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Perks v. Town of Huntington, 251 F.Supp.2d 1143, 1168 (E.D.N.Y.2003)(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언론과 자발적이고 계속적인 접촉을 갖는 것을 통하여 그 스스로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공인이 되도록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Carr v. Forbes, Inc., 121 F.Supp.2d 485, 492 (D.S.C.2000)(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논쟁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정부-민간 협력 사업들의 지도자 겸 두드러진 대변인으로 자주 활동함으로써 공적 논쟁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 역할을 맡았다”고 판결하였다) 참조.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또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진술들이 원고의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에 대한 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Waldbaum의 세 번째 검사기준 요건을 충족시켰다. 피고들은 문제된 진술들이 논쟁들과 서로 떼어 놓을 수 없게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진술들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논쟁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거나 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장된 명예훼손이 그 논쟁과 관

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Waldbaum, 627 F.2d at 1298. 법원은 기사에서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진술들이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및 원고의 사무총장 해임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먼저, 기사의 문제된 부분은 원고의 CITES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전달한다. 둘째로, 그 기사는 원고가 사무총장 겸 사무국의 대표자로서 권고한 내용이 아프리카 코끼리를 부록 I에 등재하여 상아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로, 그 기사는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과 관련하여 CITES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뿐만 아니라 개인적 조사자료와 권고안을 옹호하기 위하여 언론을 이용한다고 보도한다. 마지막으로, UNEP의 사무국장 Tolba 박사가 원고의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프리카 코끼리와 관계된 공적 논쟁에 원고가 참가한 것과 관련되었다. 특히 Tolba 박사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장래 지위에 관하여 제기될 제안에 원고의 견해를 확대하기 위하여 COP 모임에 앞서 언론에 로비를 벌였기 때문에 원고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Tolba 박사는] 이러한 원고 행동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당사국들의 봉사자로서 사무총장의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평가하였다.

원고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에 대한 참가는 사소하거나 약간 스치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토론에서 현저히 특별한 활동을 벌였다고 볼 정도로 매우 중요하였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거나 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장된 명예훼손이 그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Waldbaum, 627 F.2d at 1298. 법원은 원고의 지도자

로서의 공적 지위 또는 논쟁적 쟁점들에 대한 옹호 때문에 그 쟁점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내용들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관련이 있다고 본 유사 판결례를 접하여 왔다. Thompson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Corporate Communications for Briggs & Stratton의 이사 겸 부책임자로 근무하였고 밀워키 지역 시설에서 2,000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회사 결정을 자주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원고가 논쟁에서 “사소하거나 결가지” 역할 이상을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알려진 “기사들은 Briggs & Stratton 및 다른 회사들에 관하여 이직(移職)의 사회적·경제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공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원고가 Corporate Communications for Briggs & Stratton의 핵심적 공적 대변인이자 부책임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알려진 진술들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O'Donnell v. CBS, Inc., 782 F.2d 1414, 1417 (7th Cir.1986)(제7 연방항소법원은 원고의 논쟁 참가에 초점을 두고 “[원고]가 [환경보호청] 논쟁에서 특정한 견해의 옹호자로서 활동하였고, 그가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 창구인 언론인 신분에서 해임된 것은 필연적으로 그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였다]”고 판결하였다); Nicholson v. Promoters on Listings, 159 F.R. D. 343, 344 (D.Mass.1994)(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공적인 강연장에서 관리역할을 맡고 재정분야 논쟁의 결과물 또는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을 때, 주장된 명예훼손은 원고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여기서, 피고의 기사가 다른 사항은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록 I에 아프리카 코끼리를 등재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UNEP의 사무국장에 의하여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국제 상아 무

역의 전면적 금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위 2가지 점이 원고의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은 CITES의 사무총장으로서 원고가 자발적 제한적 공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공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기사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 단지 통상의 과실이 아닌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공인인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정 헌법 제1조가 피고를 명예훼손 소송 책임에서 보호한다고 판결하여 왔다. Sullivan, 376 U.S. 254 at 279-280, 285-286 참조. 그리하여,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Tavoulareas v. Piro 사건에서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를 공표할 당시 그 기사내용이 “(1) 짜 맞추어졌고, (2) 본질적으로 사실 같지 않아서 오직 부주의한 사람만이 유포시킬 것으로 보이거나, (3) 증명되지 않는 익명의 전화 제보 또는 피고[들]이 명백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다른 몇몇 취재원에 전적으로 기초”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피고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원고가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817 F.2d 762, 790 (D.C.Cir.1987) 원고는 “격렬하게 상아 거래 금지에 반대하였다”, “부록 I 등재 제안에 맹렬히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다”, “그 제안을 뒤엎기 위하여 기자 회견을 열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러한 진술들이 허위이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해서(with reckless disregard of

their truthfulness) 행하여진 것임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 자신이 진짜 취재원이었고 악명 높은 추문 폭로자들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취재원은 명백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Van Note는, 그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의 문제된 부분을 공표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은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를 공표할 당시 기사의 표현이 허위일 개연성이 매우 크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해서 행동하는 것임을 주관적으로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원고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 Van Note는 기사의 문제된 부분들을 작성할 때 다른 공표된 보도기사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 지식에 의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왔다. 특히 피고 Van Note는 COP의 7차 모임과 수많은 기사들의 검토를 통하여 원고와 아프리카 코끼리를 둘러싼 논쟁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각주 6).<sup>12)</sup>

원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JAB의 결정은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공표하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피고들이 사전에 위 JAB의 결정과 원고의 보

도자료를 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들이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하면서 행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 Van Note는 원고의 해임을 반복한 위 결정을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피고 Van Note의 믿음은 UN이 그 결정을 공표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측할 수 없었다는 원고 자신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나아가, 원고는 UNEP가 누구에게도 그 [결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원고 자신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최소한 그의 언론 보도자료를 접하였다고 주장한다. 보도자료는 첨부자료로서 원고의 해임과 관련된 갖가지 주장들에 관하여 원고의 결백을 입증해주는 위원회 결정의 요약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당사자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보도 자료를 입수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사실심리생략판결의 단계에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FRCP 제56조 (c)항 참조, 또한 Anderson, 477 U.S. at 255; Bayer, 956 F.2d at 333-34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기사를 공표할 당시 그 기사내용이 허위일 개연성이 매우 크거나 피고들이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하면서 행동하고 있음을 피고들이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하고

12) (각주 6) 원고(피고의 오기로 보여 짐, 번역자 주)는 그가 2003년 기사의 문제된 구절을 작성함에 있어 (1) “상아 금지를 반대한 UN 고위 관리 해임되다”라는 제목의 The Times of London 기사(1990); (2) Ted Gup이 쓴 “부끄러움의 꼬리”라는 제목의 Time 잡지의 표지기사 요약문(1989, 10, 16.); (3) Iain과 Oria Douglas-Hamilton이 쓴 “코끼리에 관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 요약문(1992); (4) Matthew Scully가 쓴 “지배”라는 제목의 책 요약문(2002); 그리고 Douglas H. Chadwick이 쓴 “코끼리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책 요약문(1992) 등 몇몇 공표된 이야기들에 의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사건은 *Lohrenz v. Donnelly*, 350 F.3d 1272 (D.C.Cir.2003) 사건과 유사하다. 그 사건에서, 미해군의 첫 번째 여자 전투기 조종사들 중 한명인 원고가 the Center for Military Readiness와 그 사장을 상대로 원고가 전투기를 조정할 자격에 미달되었으나 여자였기 때문에 해군이 그녀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전에 원고에 대한 F-14기 교관이었던 Patrick Burns 대위가 쓴 자세한 편지에 의존하였다. Patrick Burns는 원고가 “비행기를 조종하지 말아야 했지만, 정치적으로 추진된 정책 때문에 F-14기 프로그램에 투입된 표준 이하의 조종사”였다는 정보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법원의 다른 판사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내용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자 원고는 그 판결에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이전에 ... 믿었던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근거들’이 될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피고들 앞에 놓여졌다면, [원고]의 직무수행기록이라는 특정한 사실들에 관하여 의심들을 해소하였어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배척하고 “의심을 불러들이는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재원을 ‘의심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표자는 여전히 그러한 증거를 찾지 아니하고 알려진 정보에 의존할 선택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인용 *McFarlane v. Esquire Magazine*, 74 F.3d 1296, 1305 (D.C.Cir.1996)). 현재의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 자신이 진정한 취재원이고 악명 높은 추문 폭로자들이기 때문에 피고

[들]의 취재원들이 부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들은 피고 Van Note가 문제된 기사를 작성할 당시 그의 개인적 지식과 독립적인 제3자 공표물을 참조로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Lohrenz* 사건에서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단지 피고들이] 편견이 있는 취재원과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그들의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들이 기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을 주관적으로 품었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은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기사를 공표할 당시 기사 표현이 허위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하고 행동하였음을 주관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를 원고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심지어 피고들이 위원회의 결정 요약문이 포함된 원고의 보도자료를 입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상 위원회의 결정 전문이 공표되었고 피고들 및 다른 비정부기구들과 같은 제3자가 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명예훼손적 기사내용들의 공표자들은 “아무리 격렬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의 진술(denials)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인은 논쟁과 반론의 세계에서 매우 흔한 일어서 그 자체적으로는 양심적 보도자에게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거의 보내지 못한다”. 나아가, 비록 위원회의 결정 전문을 요구한 모든 사람들이 결정 전문을 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일치하는 기사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몇몇 편견어린 취재원들에 의존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진실에 대한 무모한 경시에 이르지 않는다”. *Lohrenz*, 350 F.2d at 1286(인용 *Loeb v. New Times Commu-*

nications Corp., 497 F.Supp. 85, 93 (S.D.N.Y.1980)).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분석에 기초하여, 원고의 명예훼손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한다(각주 7).<sup>13)</sup>

#### IV. 결 론

출 처 : Media Law Reporter Vol. 34, No. 19. PP. 1577-1587

번 역 : 흥 기 만 (춘천지방법원 판사)



13) (각주 7) 또한 피고의 재판 전 증거 배제 신청(Motions In Limine)이 현재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위 신청은 2006. 8. 18.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증언의 증거 제출을 막아달라는 것과 IWMC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실제 손해의 증거 제출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피고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재판 전 증거 배제 신청은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과 일치된 명령이 이와 동시에 주어질 것이다.

\* (번역자 주) Motions In Limine : limine은 '입구에서(at the threshold)'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Motion in limine이란 판사에게 어떠한 증거가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제출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 시작 전에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 신청은 배심원이 들을 수 없도록 판사실에서 통상 행하여진다. 이 신청은 보통 잠재적으로 채택될 수 없고 해로운 증거로부터 배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통상 당사자가 신청하게 되는데, 비록 판사가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그 증거를 무시하라고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재판에서 증거로 언급한 것만으로도 배심원에게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편견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 증거가 헌법적 제한을 받는 형사 재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자백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재판 시작 전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